- **제40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5.12.28.>
  -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1.1.1.>
  -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사목·차목·파목(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한함), 거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 <개정 2011.1.1., 2020.6.1.>
  -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1.1.1.>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8.1., 2011.1.1>
  -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8.1., 2011.1.1>
  -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8.1., 2011.1.1>
  -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8.1., 2011.1.1>
  -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 2011.1.1.>
  -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 <개정 2007.8.1., 2011.1.1.>
  -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7.8.1.,2011.1.1>
  -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8.1., 2011.1.1.>
  -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7.8.1.,2011.1.1>
  -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개정 2007.8.1,2011.1.1>
  -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0.6.1.>

-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경관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 제4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시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기준높이의 1.5 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 1. 자연경관지구 : 3층이하, 12미터 이하 <개정 2015.12.28., 2018.5.1.>
  - 2. 삭제<2009.5.15>
  - 3.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 12미터 이하 <개정 2015.12.28., 2018.5.1.>
  - 4. 삭제<2009.5.15>
  - 5. 삭제<2009.5.15>
- 제4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합 계는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3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 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2021.2.25.>
- 제5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 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 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15., 2013.8.1., 2018.5.1.>

- **제42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5.12.28., 2018.5.1.>
  -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개정 2011.1.1.>
  -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1.1.1.>
  - 3. 삭제 <2020.6.1.>
  -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사목·차목·파목(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거목부터 러목까지의 건축물 <개정 2011.1.1., 2020.6.1., 2023.11.10.>
  -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1.1.1.>
  -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8.1., 2011.1.1.>
  -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8.1., 2011.1.1.>
  -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8.1.,2011.1.1>
  -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8.1., 2011.1.1.>
  -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 2011.1.1>
  -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8.1., 2011.1.1.>
  -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7.8.1.,2011.1.1>
  -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8.1., 2011.1.1.>
  -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8.1.,2011.1.1>
  -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7.8.1,2011.1.1>
  -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 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 1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20.6.1.>

-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경관지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에 규정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 제4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시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기준높이의 1.5 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 1. 자연경관지구 : 3층이하, 12미터 이하 <개정 2015.12.28., 2018.5.1.>
  - 2. 삭제<2009.5.15>
  - 3. 특화경관지구 : 3층이하, 12미터 이하 <개정 2015.12.28., 2018.5.1.>
  - 4. 삭제<2009.5.15>
  - 5. 삭제<2009.5.15>
- 제4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합 계는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3천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 다. <개정 2013.8.1., 2018.5.1., 2020.6.1., 2021.2.25.>
- 제5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 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 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15., 2013.8.1., 2018.5.1.>

- **제5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8.5.1.>
  -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1.1.1.>
  -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07.8.1., 2011.1.1.>
  -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8.1,2011.1.1>
  -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8.5.1>
  -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8.1., 2011.1.1>
  -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8.1., 2011.1.1.>
  -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8.1.>
  -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 8.1.,2011.1.1.>
  -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7.8.1., 2011.1.1>
  -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
    - 가. 삭제<2016.10.1>
    - 나. 삭제<2016.10.1>
  -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 2011.1.1>
  -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 2011.1.1>
  -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 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7.2.23., 2018.5.1.>
  - 1. 삭제<2017.2.23>
  - 2. 삭제<2017.2.23>
  - ③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2.23.>, <개정 2018.5.1.>

- 제52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경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집단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 미만의 경관도로인 경우, 일정구간의 건축선이 연접된 주변의 건축선보다 2미터 이상 후퇴되어 있어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2018.5.1.>
  -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변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 2013.8.1., 2018.5.1., 2019.3.15.>
  -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 2. 조경식수
  - 3.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 제5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8.5.1.>
  - 1. 삭제<2018.5.1>
  - 2. 삭제<2018.5.1>
  - 3. 삭제<2018.5.1>
  -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높이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5.1.>
  - ③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 1. 삭제<2018.5.1>
  - 2. 삭제<2018.5.1.>
  - 3.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 와 유사한 건축물 및「건축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개정 2006.3.15., 2011.1.1., 2013.8.1., 2018.5.1>
  -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8.1., 2018.5.1.>

- 제5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시장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 경관의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8.5.1., 2023.11.10.>
- 제55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3.8.1., 2018.5.1., 2022.9.16.>
  - 1.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형성계획 및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한 경우
  - 2. 자치구의 경관위원회 또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22.9.16.>
  -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5.1.>

- **제5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8.5.1.>
  -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개정 2011.1.1.>
  -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8.1., 2011.1.1>
  -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8.1., 2011.1.1>
  -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07.8.1,2009.5.15,2011.1.1,2012.7.10>
  -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8.1., 2011.1.1>
  -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 2011.1.1>
  -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8.1,2011.1.1>
  -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8.1.,2011.1.1>
  -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8.1.,2011.1.1>
  -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7.8.1,2011.1.1>
  -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
    - 가. 삭제<2016.10.1>
    - 나. 삭제<2016.10.1>
  -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
  -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
  -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8.1,2011.1.1>
  - 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5.15.>, <개정 2011.1.1, 2018.1.1>

- **제5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18.5.1., 2019.10.15.>
  -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11.1.1.>
  -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회의장·공회 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1.1.1.>
  -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8.1.,2011.1.1>
  - 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07.8.1.,2011.1.1>
  - 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11.1.1>
  -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8.1,2011.1.1>
  -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8.1,2011.1.1>
  -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2011.1.1>
  - 9.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2007.8.1.,2011.1.1>
  - 1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 8.1,2011.1.1.>
  - 1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8.1.,2011.1.1>
  - 1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개정 2007.8.1,2011.1.1>
  - 1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 14.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11.1.1, 2013.8.1, 2016.10.1>
    - 가. 삭제<2016.10.1>
    - 나. 삭제<2016.10.1>
  - 15.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7.8.1.,2011.1.1>
  - 1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07.8.1,2011.1.1>
  - 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2007.8.1,2011.1.1>
  - ② 중요시설물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5.1., 2019.10.15.>

제58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 을 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2019.10.15., 2024.7.1.>

- 제59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적용) ① 영 제7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 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층수와 높이로 규제된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을 적용한다.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제73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및「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3.15,2011.1.1.,2023.11.10.>

- **제6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8.1.>
  -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8.1,2011.1.1>
  -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8.1,2011.1.1>
  -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7.8.1., 2011.1.1>
  -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개정 2007.8.1,2011.1.1, 2016.10.1>
  -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7.8.1., 2011.1.1., 2014.6.30.>
  -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8.1., 2011.1.1, 2013.8.1. 2016.10.1>
    - 가. 삭제<2016.10.1>
    - 나. 삭제<2016.10.1>
  -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
  - 8.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

- 제6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 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 2. 국가 또는 시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